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2020년 예비창업패키지』비대면 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아이템으로 창업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
 -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 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업종 무관)
 -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업종 무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를 심의(사업계획서에 비대면 연관성을 기재)
- 비대면 일반분야는 공고일 기준, 출생일자에 따라 청년*, 중장년** 으로 구분하여 모집

* 청년 : 만 39세 이하(1980년 7월 18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17일 이전 출생)인 자

□ 선정규모

- 총 600명 내외

* 예비창업자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규모는 감소할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규모 : 600명 내외 (최종선정자 기준)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20. 8. 10(월), 18:00) 후 신청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선정자는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교육 등 지원

○ 비대면 일반(비대면 전 기술분야)

* 비대면 일반분야는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를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선정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청년 중장년		소재지	멘토 유형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청년 중장년		소재지	멘토 유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11	4	경남(창원)	PD형	동아대학교	7	3	부산	전담 멘토형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8	4	경북(구미)		부산대학교	8	4	부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1	4	광주		성균관대학교	9	4	경기(수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1	5	대구		송실대학교	14	6	서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0	4	대전		연세대학교	14	6	서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1	4	부산		원광대학교	8	4	전북(익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11	4	서울		인천대학교	11	5	인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7	3	울산		전북대학교	10	4	전북(전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4	6	인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	3	경기(시흥)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4	6	전남(여수)		한밭대학교	9	4	대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7	3	충남(아산)		한양대학교	15	6	서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0	4	강원(춘천)		호서대학교	11	5	충남(아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8	4	세종		벤처기업협회	21	9	서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9	4	전북(전주)		한국발명진흥회	25	10	서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6	3	충북(청주)		한국세라믹기술원	7	3	경남(진주)	
강원대학교	6	3	강원(춘천)		한국여성벤처협회	21	9	서울	
건국대학교	4	1	서울		한국입법진흥원	7	3	서울	
계명대학교	6	3	대구		한국표준협회	18	7	서울	
대구대학교	7	3	경북(경산)						

* 멘토유형이 PD형인 주관기관의 경우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 부처협업 특화(비대면 유망기술 분야)

세부분야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소재지	멘토유형
의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	서울	전담 멘토형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	대구	
기반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한국특허정보원	20	서울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20.7.1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 사업자 등록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20.7.17)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단,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 ([참고 1]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 중단(중단처분·포기자)자도 지원 제외대상임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통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운영인력*
 -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7개월 ('20.9월~'21.3월 예정)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바우처*) 평균 52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지원(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 멘토유형이 PD형인 주관기관의 경우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구 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바우처)	<p>☞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 비목정의 및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비목</th> <th>비목 정의</th> <th>집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td> <td rowspan="10"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td> <td>•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td> </tr> <tr> <td>인건비</td> <td>•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td> </tr> <tr> <td>지급수수료</td> <td>•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제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td> </tr> <tr> <td>여비</td> <td>•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교육훈련비</td> <td>•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광고선전비</td> <td>•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r> <td>창업활동비</td> <td>•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td> </tr> </tbody> </table>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제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제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p>☞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40h)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u>미이수자는 선정 취소조치</u>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을 32시간 운영(일정 추후 안내)하고, <u>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u> 																									
<p>☞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 또는 PD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 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멘토형 주관기관 신청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담멘토 POOL에서 전담멘토 선택 가능 * PD형 주관기관 신청자는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4 신청 · 접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7월 22일 (수) ~ 8월 10일 (월), 18:00까지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 가점 증빙서류, 창업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참고] 필요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신청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 ('20.8.10(월), 18:00) 이후 제출사항 변경 불가
 - * 개명인, 미성년자, 외국인의 경우, 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tartup 가입이 제한되므로 유의(문의 : ☎ 국번없이 1357)
 - * 최종 선정자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전담멘토(PD) 매칭 등을 수행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예비창업패키지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⑧ 사업계획서(가점증빙서류 포함)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 ('マイ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 * 분과별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비대면 서비스/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5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주관기관에서 평가)	▣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 (주관기관에서 신청자 별도 안내)
- * 발표평가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가점항목	점수
1) 팀창업 우대 -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창업팀 * 선정 시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여 팀원을 채용하고, 팀원 1인 이상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으로 고용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취소 및 전액환수 조치 * 팀창업 기준은 [참고 3] 참조	1점
2)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3)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창업경진대회 목록은 [참고 2] 참조 *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4) 고용·산업 위기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5) 감염병* 예방·진단·퇴치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1점

-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 수료생,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서류평가 면제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동 사업 모집공고의 절차대로 사업 신청을 하여야하며, 사업계획서 및 필수 서류(증빙 등)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서류평가 면제 대상	기준
1)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 수료생 * '19년 린-스타트업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시장성, 발전가능성 등이 검증된 수료생	창업아이템은 동일하여야 하며 창업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주관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상자 별도 안내)
2)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 '19년 부처별 예선리그(혁신창업, 학생, 국방 등)를 통한 통합본선 진출팀	

□ 평가지표

- 세부평가 지표별 평점이 평가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자는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세부평가	평가내용	배점	최소 득점기준
1. 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15점	18점
	1-2.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15점	
2. 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5점	18점
	2-2.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15점	
3. 성장전략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10점	12점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점	
4. 팀 구성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20점	12점

* 서류평가·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동일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 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 선정자는 협약기간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창업아이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 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 (사전, 역량강화, 심화)을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1577-5475, www.startbiz.go.kr)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PD의 사업장 현장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전담멘토·PD가 협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임차현황, 직원 근무현황, 구입 기자재 활용 현황 등을 확인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함
 - *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합니다.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동시수행 불가)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선정·지원 제외)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 참고
- 폐업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과거의 사업자와 동종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창업기업의 동 사업 사업계획서상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공 고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0.7.17	'20.7.22 ~ '20.8.10	~ '20.8.월 중
사전교육	협약준비	지원대상 선정 공지
사전교육(8시간) 이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K-startup 누리집
'20.9월 중	'20.9월 중	'20.8월 말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	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시제품 개발, 창업, 역량강화 심화교육(32시간) 이수 등	창업자, 주관기관
'20.9월 말	'20.9월~'21.3월(7개월)	(중간) '20.12월 / (최종) '21.4월

◆ '20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일정,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K-startup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 문의

- **사업 신청 문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 : 주관기관 ([참고 4] 참조)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증기부(舊 증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년 ~'20년)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 동 사업 신청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3대 신산업 분야),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 2020년 BIG 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선정 공고		
- 2020년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선정 2차 공고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참고 2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대한민국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
	2019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해커톤)	혁신상, 성장상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R&D 챌린지	특별상 이상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 이상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수상자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보건복지부	바이오코리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국토교통부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수산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
산림청	산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참고 3

팀창업 기준

- 팀창업 개념 : 창업아이템 개발 등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2인 이상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이루어진 예비창업팀*

* 사업계획서 양식의 팀창업 신청서에 포함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팀창업 조건 : 선정자는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

- 팀원은 선정자가 창업한 기업에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되어야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의 인건비는 선정자가 부담

- 선정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67조)에 있는 자,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팀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인건비는 지급 불가

- 팀원 1인 이상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으로 고용 유지

- 팀원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제출한 팀원의 축소,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 팀원에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 가능

* 사유 예시 : 팀원의 이직, 퇴사, 군입대, 출산 등

- 팀원 변경의 적정성 등은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 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 단, 최소 1인 이상의 팀원은 변경 없이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고용유지 필수

- 팀창업 점검 : 팀창업으로 가점을 받은 자(기업)는 팀창업 이행현황, 팀원의 근태현황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수시 확인

*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근로현황, 업무내역 등 확인

- 점검결과 부적정 현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협약 중단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부적정 현행 : 팀원의 4대보험 미가입, 업무관련 현황(이메일, 출근기록 등) 확인 불가, 창업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참고 4

주관기관 연락처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김예은	033-248-7961	kye@ccei.kr
	매니저	이혜경	033-248-7960	rud5907@ccei.kr
	매니저	정현석	033-248-7953	hnsk@ccei.kr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원	배한진	055-291-9384	bhj7832@ccei.kr
	사원	이준호	055-291-9305	junholee@ccei.kr
	사원	이윤주	055-291-9304	yun21@ccei.kr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엄재욱	054-470-2634	eom@ccei.kr
	매니저	박리하	054-470-2636	rhpark@ccei.kr
	전임	윤혜수	062-974-9356	yhs@ccei.kr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김창섭	062-974-9354	wbhsb@ccei.kr
	전임	최승은	053-759-9657	sechoi@ccei.kr
	전임	최상혁	053-759-8132	shchoi@ccei.kr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최재선	053-759-8616	jschoi@ccei.kr
	주임	김용학	053-759-9658	kyh@ccei.kr
	과장	김영재	042-385-0644	youngjae@ccei.kr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서경찬	042-385-0667	skc35@ccei.kr
	주임	박진솔	042-385-0620	pjs0819@naver.com
	매니저	장영은	051-749-8956	jye8716@ccei.kr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박기쁨	051-749-8952	pipiyo77@ccei.kr
	매니저	신혜원	02-739-7264	hwshin@ccei.kr
	매니저	윤희	02-739-9738	hyoon@ccei.kr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이혜원	02-739-5198	hwlee@ccei.kr
	매니저	허정란	02-798-9319	jrheo@ccei.kr
	PM	유선미	044-999-1047	ysm@ccei.kr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PM	강지애	044-999-0230	kja@ccei.kr
	PM	이정민	044-999-1084	jm0613@ccei.kr
	전임	배수진	052-716-5160	ellabsj@ccei.kr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김소영	052-716-5161	ksyoung@ccei.kr
	매니저	이화영	032-458-5036	2hwa000@ccei.kr
	매니저	최나해	032-458-5066	cjh@ccei.kr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사원	김정인	061-661-1934	jikim@ccei.kr
	사원	김주환	061-661-1927	story625@ccei.kr
	사원	윤승후	061-661-1929	yyrer90@ccei.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원	허지은	061-661-1928	hheoji@ccei.kr
	사원	박도현	061-661-1935	parkdh_94@ccei.kr
	사원	이민정	063-220-8943	mj96@ccei.kr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원	횡동건	063-220-8947	hdg91@ccei.kr
	매니저	박소연	041-536-7882	syp0703@ccei.kr
	책임 연구원	강다윤	043-710-5943	kyd@ccei.kr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김건기	033-250-8969	3kangel@naver.com
	매니저	최병용	033-250-8976	gdb01@naver.com
	매니저	김민주	033-250-8961	mj_kkkk@kangwon.ac.kr
건국대학교	매니저	김소희	02-450-3347	soh22@konkuk.ac.kr
	매니저	박지연	02-450-4287	jypark01@konkuk.ac.kr
	책임 매니저	최지현	053-620-2042	hyunia@kmu.ac.kr
계명대학교	매니저	정윤혜	053-620-2045	yhjung@kmu.ac.kr
	매니저	서대환	053-620-2066	sdh@kmu.ac.kr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대구대학교	매니저	김현주	053-850-4389	s0169@daegu.ac.kr
	매니저	김규리	053-850-4376	sally0.0@daegu.ac.kr
동아대학교	매니저	정유나	051-200-6365	wjddbsk@dau.ac.kr
	선임매니저	박수연	051-200-6365	yeony@dau.ac.kr
부산대학교	매니저	백보경	051-200-6452	bokyeong.dau.ac.kr
	선임매니저	김현진	051-510-1994	hjkim@pusan.ac.kr
성균관대학교	주임매니저	최지훈	051-510-1994	cjh5873@pusan.ac.kr
	매니저	주민정	031-290-5857	happystartup@skku.edu
승실대학교	매니저	김현지	031-290-5850	happystartup@skku.edu
	매니저	김정환	02-828-7482	junghwan1807@ssu.ac.kr
연세대학교	매니저	송주영	02-828-7056	do1234@ssu.ac.kr
	매니저	심지연	02-828-7481	sjyeon0320@ssu.ac.kr
원광대학교	매니저	이민정	02-2123-4310	mjlee2167@yonsei.ac.kr
	매니저	윤 설	02-2123-4317	xuehua@yonsei.ac.kr
인천대학교	매니저	이수산나	063-850-7458	violet4779@nate.com
	매니저	김경민	063-850-7469	blue_mocha@naver.com
전북대학교	매니저	김새로	063-850-7477	godkoko2002@hanmail.net
	선임	유다을	032-835-9687	prestartup@inu.ac.kr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선임	홍승아	032-835-9686	prestartup@inu.ac.kr
	매니저	김진경	063-219-5535	jinny9966@jbnu.ac.kr
한밭대학교	매니저	이경진	063-211-7600	shine0322@jbnu.ac.kr
	매니저	이규배	031-8041-0986	lkb518@kpu.ac.kr
한양대학교	매니저	이예빈	031-8041-0985	yebin33@kpu.ac.kr
	매니저	김신정	031-8041-0984	kimsj4872@kpu.ac.kr
호서대학교	팀장	강혜정	042-828-8663	hjkiki0203@hanbat.ac.kr
	매니저	신미란	042-828-8667	shmr@hanbat.ac.kr
한양여자대학교	매니저	김하영	02-2220-2857	mindhaje@hanyang.ac.kr
	매니저	박선해	02-2220-2863	sunhae@hanyang.ac.kr
한국여성대학교	매니저	최성훈	041-540-9929	sh200106@hoseo.edu
	매니저	김동민	041-540-9924	kdm7@hoseo.edu
한국여성대학교	매니저	박형주	041-540-9934	starry@hoseo.edu
	매니저	이승아	041-540-9933	oklsa@hoseo.edu
한국여성대학교	부장	박범준	02-890-0586	bumjoonp@seoulvi.com
	대리	오제관	02-890-0561	ojk@seoulvi.com
한국여성대학교	매니저	김소영	02-890-0614	ksy@seoulvi.com
	과장	장인준	02-3459-2860	injun@kipa.org
한국여성대학교	사원	이하나	02-3459-2803	hana73@kipa.org
	선임	차연경	031-645-1407	venture@kicet.re.kr
한국여성대학교	팀장	권성용	02-3440-7466	ksy@kovwa.or.kr
	매니저	김민혜	02-3440-7472	mhkim@kovwa.or.kr
한국여성대학교	매니저	김요진	02-3440-7465	yjkim@kovwa.or.kr
	선임	김진희	02-6393-2635	jh951204@kofpi.or.kr
한국여성대학교	팀장	황인국	02-6240-4786	hik1107@ksa.or.kr
	위원	이문혁	02-6240-4787	standard91@ksa.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오치훈	02-2095-1742	chihun89@khidi.or.kr
	연구원	김정현	02-2095-1744	kimjh1950@khidi.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명창훈	053-714-0306	mch0724@keris.or.kr
	연구원	김대권	053-714-0402	kdk@keris.or.kr
한국특허정보원	대리	정수영	02-6915-1569	sooy@kipi.or.kr